

상주시 보건소장(개방형 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상주시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8일

상주시인사위원회



1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-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- 「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」
- 「지역보건법」 제15조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)
-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(보건소장)

2. 임용직위 및 인원

임용예정 직 위	임용예정 직 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주요업무(지역보건법 제11조)
상주시 보건소장	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(개방형4호)	1명	임용일로 부터 2년	<상주시보건소 업무 총괄> ○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○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연구 및 평가 ○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 ○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○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○ 그 밖에 보건소 관련 사무 등 · 보건소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· 보건지소·진료소 관리 및 지도, 감독

3. 응시 자격

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거주지, 성별, 연령 제한없음 (단,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

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: 퇴직일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자격요건

- 아래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을 갖추고,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

구 분		자 격 요 건
필요	수건	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제13조 의거 「의료법」에 따른 <u>의사면허를 소지한 자</u>
경요	경력	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민경 간력	③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※ (관련분야)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분야

- 의무·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약무·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

※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, 경력요건은 각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응시 가능

4. 임용 신분 및 보수 수준

임용 신분

- (민간인의 경우)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, 임용기간 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
- (공무원의 경우)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

보수 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[별표13] 제5호 나목에서 정한 개방형직위(4호)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%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·자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일반임기제(개방형 4호)	-	68,106천원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-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

5. 시험 방법

1차 시험(서류전형) ▶ 형식요건 심사

- (심사방법) 제출서류를 통해 임용자격요건 심사
 - (결과 발표) 상주시 홈페이지 「채용공고」란에 공고
- ※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

2차 시험(면접시험) ▶ 적격성 심사 /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
- (심사방법) 개별 면접, 직무수행요건 심사표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 - (평가 요소)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
- ※ 심사 결과에 따라,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(응시자 중 적격자 없는 경우)

6. 시험 일정

응시원서 접수	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발표	2차 시험 (면접시험)	최종합격자 발표
2025. 11. 10.(월)~11. 12.(수)	2025. 11. 21.(금)	2025. 11. 28.(금)	2025. 12. 10.(수)

- ※ 합격자 발표는 상주시 홈페이지 「고시공고」란에 게시하며, 면접시험일과 합격자 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 (원서교부) 상주시 홈페이지 「고시공고」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 (접수기간) 2025. 11. 10.(월) ~ 11. 12.(수) 18:00까지

○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(09:00 ~ 18:00) 접수 / 중식시간(12:00 ~ 13:00) 제외

 (접 수 처) 상주시청 본관 2층 총무과 인사팀(☎ 054-537-7163)

 (접수방법)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
<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>

-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(우37211)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, 상주시 총무과(인사담당자)
- '우체국 통상환증서(10,000원)' 반드시 동봉하되, 응시원서에 부착 금지
- **우편발송 후 반드시 사전 연락요망 ☎054-537-7163**

8. 제출서류

제 출 서 류	비고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	[별지 제1호]
② 응시원서 1부 (*응시수수료 10,000원) ▶ 방문접수 : 상주시 수입증지 (상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발급) ▶ 우편접수 : 우체국 통상환증서(별도 동봉, 응시원서 부착금지) ※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사용불가	[별지 제2호]
③ 이력서 1부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(미첨부 시 불인정)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,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	[별지 제3호]
④ 자기소개서 1부 (A4 3매 이내)	[별지 제4호]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(A4 5매 이내) ▶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, 추진전략,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	[별지 제5호]

제 출 서 류	비 고
⑥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각 1부 ▶ 대학교 이상은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▶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(공증포함) 첨부	
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▶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(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) ·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하여 인정 ▶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 ▶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'주당 근무시간'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	
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▶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또는 고용보험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"보험가입 전체기간" 발급	
⑨ 면허증(또는 자격증) 사본 1부(해당자) ▶ 의사면허, 정보화 자격증 등	
⑩ 학위·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1부(해당자) ▶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(사본)와 논문 요약서 제출	[별지 제6호]
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	[별지 제7호]
⑫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	[별지 제8호]
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	[별지 제9호]
⑭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	[별지 제10호]
⑮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	[별지 제11호]
⑯ 주민등록 초본 1부(남성의 경우,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)	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

<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>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바랍니다.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(단, 경력·재직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),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(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
9. 기타 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상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응시자(서류전형 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※ 위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재공고 기간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
-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상주시 홈페이지 「고시공고」란에 게시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총무과 인사팀(☎054-537-7163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모음.
2. 직무수행요건 명세서. 끝.